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1. 개정이유

친환경 인증기관이 재심사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어 인증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함에도 인증기관이 재심사 없이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하여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보완하고,

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취급자 등이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취급, 제조·가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 재심사 요건 구체화(안 제15조 및 제18조)

-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인증사업자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등은 인증기관이 반드시 재심사하도록 하여 인증사업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보완함.

나. 인증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안 제90조)

- 인증수수료를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취급자 등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 9)

-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취급자, 유기가공식품 사업자,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사업자에게 1차·2차 시정조치명령, 3차 인증취소 하던 것을 2차 시정 조치명령과 3차 인증취소를 삭제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취급,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함.

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비인증 원료를 5퍼센트 이내 허용(안 별표 14)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원료로 비인증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인증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받은 원료가 없어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증명하는”을 “증빙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의 비의도적 오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중 “증명하는”을 “증빙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
결정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
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4 제5호자목1) 단서 중 “불가항력적”을 “비의도적”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3)나)(2) 위반행위란 (2) 중 “불가항력적”을 “비의도적”으로 하고, 같은 목 3)다)(11) 위반행위란 (11) 중 “불가항력적”을 “비의도적”으로 하며, 같은 목 3)라)(7) 위반행위란 (7) 중 “불가항력적”을 “비의도적”으로 하고, 같은 목 3)마)(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성분이 0.01mg/kg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		
--	---------	--	--

별표 9 제2호가목3)바)(2) 위반행위란 (2) 중 “불가항력적”을 “비의도적”으로 하고, 같은 목 3)사)(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0.01mg/kg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		
---	---------	--	--

별표 9 제2호가목3)아)(3)(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료 또는 재료 인증품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		
--	---------	--	--

별표 14 제3호나목1) 단서 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를 “이상이어야

하며,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단서 중 “불가항력적”을 “비의도적”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증명하는”을 “증빙할 수 있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u>증명하는</u>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① ----- ----- ----- ----- ----- ----- ----- ----- 증빙할 수 있는 -----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에 ----- 해당하는 경우는 재심사를 실시 ----- 하여야 한다.
<신 설>	1. <u>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의 비의도적 오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u> 2. <u>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u>

③·④ (생략)

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

고시하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① -----

증빙할 수 있는 -----

--.

②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 결정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u>급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90조(수수료) ① (생략) ② <u>신청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③ <u>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u>	제9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 <u><삭 제></u>
---	---